심사경과보고서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호
심사일자	2026. 10. 15.

위원장 전 정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 (우편번호 05584) / Tel : (02)2147-3600 / Fax : (02)2147-3956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경 과 보 고 서

의안번호	24

2026년 10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10. 1. 송파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6. 10. 7.

다. 상정일자: 2026. 10. 15. 제335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지혜영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어르신·청년 정책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한시기구 종료 및 조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직 신설 및 폐지

- 국 신설: 환경정원국
- 단 폐지: 전략기획단(한시기구 종료, 2026.12.31.)
- 부서신설: 청년담당관
- 부서폐지: 전략기획과

○ 조직개편 전·후 비교

현 행	1의회사무국 6국 1단 1소(4과, 1지소) 2담당관 38과 1사업소(1박물관) 27동
⇓	
개편후	1의회사무국 7국 1소(4과, 1지소) 3담당관 37과 1사업소(1박물관) 27동

○ 조직기능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명칭 정비

- 국 명칭 변경: (전) 도시현대화국 ⇨ (후) 주택도시국
  (전) 교통환경국 ⇨ (후) 교통운영국
- 부서 명칭 변경: (전) 공원녹지과 ⇨ (후) 정원도시과

○ 국(局) 직제 및 부서 편제 조정

건제순	변 경 전		변 경 후	
1	부구청장 직속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부구청장 직속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2	행정안전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도시안전과, 첨단도시과, 민원행정과, 여권과	행정안전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도시안전과, 첨단도시과, 민원행정과, 여권과
3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재무과,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재무과,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4	주민복지국	복지돌봄과, 생활보장과,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주민복지국	복지돌봄과, 생활보장과,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5	교육문화국	교육협력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책박물관	교육문화국	교육협력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책박물관
6	도시현대화국	주택사업과,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주택도시국	주택사업과,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공간개발과**, 건축과
7	교통환경국	도시교통과, 주차정책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맑은환경과, 청소행정과, 자원활용과	환경정원국	**청소행정과, 자원활용과, 맑은환경과, 정원도시과,**
8	전략기획단	전략기획과, 공간개발과	교통운영국	도시교통과, 주차정책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부동산정보과**
9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생애건강과, 돌봄건강지원센터(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생애건강과, 돌봄건강지원센터(보건지소)

○ 송파2동 주민센터 임시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안 별표2)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125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관련부서 사전협의: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보육과: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개정문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관계법규 : 별첨
(2) 입법예고: 2026. 9. 23. ~ 9. 29.
※ 근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손지훈)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0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4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정책 등 변화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송파구청의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임.

○ **주요 내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6국 1단 1소 2담당관 38과 1사업소 27동**이었던 조직이 **7국 1소 3담당관 37과 1사업소 27동**으로 개편되는 내용으로, 한시기구인 전략기획단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정원국 및 청년담당관을 신설하고, 기존 부서의 기능을 재편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및 환경·정원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6국 1단 2담당관 38과에서 7국 3담당관 37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한시기구의 종료에 따른 조직 정비와 함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재편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 보고**드림.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김서윤 위원

○ 부칙 제2조제4항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에도 변화가 있는 것인지? 위원회에 위원이 추가되는 사항이라면 어떤 관련성이 있어서 당연직 위원에 추가되는 것인지? 당연직 위원 추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 청년담당관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되는데, 업무처리 속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조직 진단에서 확인된 문제가 있는지?

【답변】 지혜영 총무과장

○ 당연직 위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자동으로 반영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됨.

○ 담당관은 원래 일반 과보다는 포괄적인 조직인데, 청년담당관은 여러 부서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서간 의견이 있어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신설하게 되었음.

【질의】 유미현 위원

○ 안 제7조제2항제4호 ‘어르신’을 ‘경로’로 변경한 사유 설명 요구.

○ 안 제11조의 전략기획단이 폐지되면서 국제교류복합연계 사업은 삭제되었는데,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것인지? 해당 사업이 없어지는 것인지?

【답변】 지혜영 총무과장

○ 과 명칭은 익숙한 어르신으로 하되, 팀 명칭은 경로로 하여 명칭을 간략화하고자 하였음.

○ 주택도시국 공간개발과에서 계속 추진할 예정임.

【질의】 김안나 위원

○ 이번 조직개편으로 청년담당관이 신설되는데, 기존 체계와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기존에 청년 정책 관련 주요 사업과 추진 실적은 무엇인지? 그동안 청년 정책 관련 추진에 어떤 한계가 있었던 것인지?

【답변】 지혜영 총무과장

○ 예전에는 청년 관련 업무가 일자리 쪽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점차 관련 업무가 늘어나면서 한 개의 팀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워짐에 따라 과를 만들게 되었음.

【질의】 이승희 위원

○ 환경정원국의 국 명칭에서 '정원'이라는 특정 분야를 부각한 사유는? 환경 정책을 총괄하고 탄소중립기본계획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과 권한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답변】 지혜영 총무과장

○ 환경, 정원, 녹지 등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어 탄소중립 관련 업무는 맑은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며, 서울시에도 정원도시국이 있고, 주민참여형 정원사업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와 통일성도 가지고 가면서 송파구의 정원 관련 사업 확대에 따라 국 명칭에 정원을 추가하게 되었음.

【질의】 박지효 위원

○ 다른 안건과는 달리 본 일부개정조례안만 입법예고 기간이 짧은 사유는 무엇인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이 있었는지, 접수된 의견이 있었다면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 비용추계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안내시설, 간판 등 부대비용 등은 본예산에 편성되었는지?

【답변】 지혜영 총무과장

○ 전략기획단이 올해 말에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에 본 개정안이 의결되어야 구청에서 관련 규칙을 본 개정안에 맞춰 개정하고, 직원 전보 등 인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음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좀 단축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음.

○ 증원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건비는 발생되지 않음. 부서 변경에 따른 안내시설 정비 등 부대비용은 부서별 자체 경비 내에서 가능함.

5. 심사결과: **보류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조직진단의 내용 및 결과, 기능별 업무량과 인력 재배치 계획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함.**
- **조직의 신설, 폐지에 따라 필요한 비용과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함.**
-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 개선 여부 및 조직과 기능 조정이 실질적인 업무 개선과 구민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
- **조직개편의 타당성과 실효성, 추진시기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집행부에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준비하여 위원들에게 관련 자료 전달 및 설명을 요청함.**